거창군 Geochang County
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.

공 보

제755호 2020. 6. 17.(수)

거창 후 거창

선 결	기관의 장

고 시

제2020-70호 도로명주소 고시 ····· 2

공 고

제2020-848호 거창군계획시설(시설:수도공급설비)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4
제2020-855호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제정안 입법예고 ····· 7

회 람									

발 행 : 거창군 편 집 : 기획예산담당관 (055-940-3043, 행정 3043)

※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(http://www.geochang.go.kr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

거창군 고시 제2020 - 70호

도로명주소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. 6. 10.

거창군수

○ 부여한 도로명주소 :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가조가야로 374 등 8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(폐지)사유	비고
(별 도 열 람)				

○ 도로명주소 사용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는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7조의3 및 제8조,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-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(☎055-940-3312)에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부여

일련번호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고 시 일		도로명부여사유	비고
			도로명	도로명주소		
1	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 1162-1	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가조가야로 374	20090702	20200617	거창군 가조면과 합천군 가야면을 잇는 도로	신규
2	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임불리 274	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월행로 352-68	20090702	20200617	행정구역명(월포+행정) 반영	신규
3	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482-4	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수남로 1934-10	20090702	20200617	행정구역명(수동면+남상면) 활용	
4	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153-4	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고제로 740-129	20091228	20200617	행정구역 고제면을 지나가는 도로라 하여 고제로라 명명	
5	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668-27	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3길 16-12	20090401	20200617	거열로의 시작점에서 부터 세번째로 분기되는 도로	신규
6	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거기리 44	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고대길 158-15	20090401	20200617	고대라는 사람이 마을을 열었다고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	
7	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340-2	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상수월길 193	20090401	20200617	상수월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	
8	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507-6	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주암길 16-26	20090401	20200617	마을 뒤편 소류지 우측 작은 산아래에 배모양의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	

거창군 공고 제2020-848호

거창군계획시설(시설:수도공급설비)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

거창군 고시 제2008-43(2008.9.25.)호로 최초 결정된 거창군계획시설(시설:수도공급설비)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사항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2020. 06. 12.

거 창 군 수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1076-1번지 일원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○ 종 류 : 군계획시설사업(시설:수도공급설비)

○ 명 칭 : 위천정수장 내 망간제거시설 건축물 증축공사

3. 사업시행 규모 및 내용

가. 부지면적 : 4,120㎡

나. 사업개요 : 정수시설 증설 163.8㎡(당초 263.31㎡, 변경 427.11㎡)

4. 사업 시행자

❍ 주 소 : 거창군수(수도사업소장)

❍ 성 명 :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

5. 사업기간 :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~ 2020. 12. 31.

6. 열람기간 :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

7. 열람장소 : 거창군청 도시건축과(☏055-940-3583)

8. **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:** 붙임참조

9. **의견제출 및 열람 :**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서류는 위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토지·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의견서(서식)

○ 실시계획(안)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

○ 성　명 :

○ 연락처 :

○ 기타 참고사항.

❒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

일련번호	소 재 지	지번	지목	지적 면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소유자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비고
						주소	성명	권리명	권리자	
합계	-	-	-	4,120	4,120					
1	위천면 상천리	1076-1	수	4,120	4,120	-	거창군			

거창군 공고 제2020-855호

「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정안 입법예고

「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0년 6월 12일

거 창 군 수

1. 자치법규명 :「거창군 재난현장 통합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」

2. 제정이유

통합자원봉사지원단 조직 구성 및 단원 직무 분장, 운영절차 등을 마련하고 지원단과 재난부서 간의 협력체계 마련 및 자원봉사자 재난현장 역량제고를 위해 이 조례(규칙)를 제정함.

3. 주요내용

가. 목적, 책무, 운영주체 (안 제1조 ~ 제3조)

나. 지원단 구성, 실무팀 편성, 설치 시 고려사항(안 제4조 ~제7조)

- 조례 규칙 제정안 [별표]

다.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(안 제8조)

- 지원단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에 참여토록 조치

4. 개정조례안 : 붙임

5. 입법예고 기간 : 2020. 6. 12. ~ 7. 2. (20일간)

6. 의견제출

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 방문 등

- 주　　소 : (우 50132)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, 복지정책과
- 전화번호 : 055)940-3143, FAX : 055)940-3089
- 전자우편 : dldbcjs@korea.kr

붙임 1.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.

2. 거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·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부. 끝.

입법예고 의견 제출서

□ 자치법규명 :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　　소 :

○ 생 년 월 일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의　　견	비　고

＜제정안＞

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2020-

제출일자	2020. 6.
제 출 자	복지정책과장

1. 제안 이유

통합자원봉사지원단(이하 “지원단”) 조직 구성 및 단원 직무 분장, 운영절차 마련 등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설치·가동태세를 완비하고자 이 조례(규칙)를 제정함.

2. 주요내용

가. 지원단 설치 목적, 책무, 운영주체(안 제1조 ~ 제3조)

나. 지원단 구성, 실무팀 편성, 설치 시 고려사항. (안 제4조 ~ 제7조)

1) 조례 규칙 제정안[별표]

다.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. (안 제8조)

1) 지원단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에 참여토록 조치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7조의2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　　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0. 6월 중 (20일)

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 (있는 경우 결과요약서 붙임)

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3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분석: 분석결과반영

거창군　　제　　호

거창군 재난현장 통합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책무) 거창군수는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,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3조(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·운영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6조제2항에 따른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"지역대책본부"라 한다)의 본부장(이하 "지역대책본부장"이라 한다)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(이하 "지원단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한다.

제4조(구성)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지원단의 단장(이하 "단장"이라 한다)은 「거창군 자원봉사센터 지원조례」에 따른 거창군 자원봉사센터(이하 "자원봉사센터"라 한다)의 장이 된다.

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·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.

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1.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거창군(이하 "군"라 한다) 소속 공무원
2. 자원봉사센터의 직원

3.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

4.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

제5조(단장 임무)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.

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,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실무팀의 편성)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.

1. 상황총괄팀

2. 모집·배치팀

3. 활동관리팀

4. 활동지원팀

5.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

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에 따라 구성 하되,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단의 설치)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
1.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

2. 「재해구호법」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

3. 자원봉사자의 규모

4.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

5.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

제8조(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)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.

② 지역대책본부장은 「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.

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
제9조(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)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.

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,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, 자원봉사활동의 사진·영상,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지원단 운영 표준 업무 구성(제6조제2항 관련)

< 직무분담표 >

팀 명	직 위	담당 사무
단장	민간인 (거창군 자원봉사센터장)	▸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·운영 총괄
상황총괄팀	거창군 복지정책과 자원봉사 담당계장	▸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▸ 지역대책본부와의 연계(상황 공유·보고 등) ▸ 지원단 관련 홍보 총괄
	거창군 복지정책과 자원봉사 담당공무원	▸ 재난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 사항 발굴 ▸ 지원단 관련 행·재정 지원
	거창군 자원봉사센터 전산코디네이터	▸ 자원봉사활동 수요조사 ▸ 자원봉사 모집·등록·교육 배치 관련 사항 총괄
활동관리 지원팀	거창군 자원봉사센터 교육코디네이터	▸ 재난 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 사항 총괄 ▸ 자원봉사활동 모니터링
	거창군 자원봉사협의회장	▸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·장비 소요 파악 ▸ 자원봉사활동 모니터링
	대한적십자사 거창군지구회장	▸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지원 ▸ 자원봉사자 상해나 질병 시 지원

붙임 1 관계법령

□ 재난안전관리법 17조의 2 [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]

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자원봉사자의 모집·등록
2.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
3.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
4.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
5.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
6.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 [자원봉사활동의 범위]

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
2. 지역사회 개발·발전에 관한 활동
3.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
4.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·보호에 관한 활동
5.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
6.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
7.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
8.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

□ 재해구호법 제12조(재해구호 관련 기관 등과의 협조)

① 구호기관은 재해구호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구호지원기관 및 자원봉사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② 이재민등과 그 인근 거주자는 구호기관의 구호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.